짐바브웨 광물자원개발투자 환경 및 법제 연구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이준기, 안현철

I. 본 연구의 목적

짐바브웨의 광산개발은 약 10세기경 금광 개발에서 시작되었으나 1890년 영국의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짐바브웨는 현재 200여 종의 다양한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만 해도 30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즉 짐바브웨는 연 생산량 기준으로 금, 백금, 크롬, 석면, 리튬 등 각종 광물을 세계 10위 이내로 생산하고 있고 잠재매장량 기준으로 세슘(세계 2위), 백금(세계 2위), 크롬(세계 3위), 리튬(세계 7위), 니켈(세계 16위) 등의 각종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1)]

또한 짐바브웨는 풍부한 광물자원, 관광자원, 좋은 기후 및 토양 조건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농업기반, 비교적 우수한 경제 인프라, 양질의 노동력(문자해독률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 및 아프리카 역내 시장에 대한 뛰어난 입지조건 등을 보유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음으로 산업화의 기반을 잘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국가간, 기업간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의 자원부국인 짐바브웨의 광물자

1) 컬러풀 아프리카, 매일경제신문사, 2011년, 60면 등 참조

원개발투자 환경 및 그 법제를 소개하여 국내 기업이 짐바브웨의 광물자원개발 사업에 진출할 경우 법제 이해를 돕기 위함에 있다. 이하에서는 짐바브웨의 정치 및 광업·경제의 현황, 짐바브웨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짐바브웨의 광물자원투자 관련 법제를 설명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Ⅱ. 짐바브웨의 정치 및 광업·경제 현황

1. 정치 현황

1980. 4. 18.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짐바브웨의 정치 현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2)]

1980. 4. 18.	영국으로부터 독립, 무가베 수상 집권
1985. 6.	독립 후 최초 총선 실시
1987. 10.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헌법 개정
1996. 3.	대통령 선거, 무가베 대통령 당선
2000. 6.	총선 실시 (무가베가 이끄는 ZANU-PF 총선 승리)
2002. 3.	제3대 대통령선거 실시, 무가베 대통령 재당선
2003. 12.	무가베 대통령, 영연방회의 참석거부 제재를 이유로 영연방 탈퇴 선언
2005. 11. 26.	개정 헌법에 따른 상원 선거 실시
2008. 6. 27.	대선 결과: 무가베 대통령 85.5% 득표로 재기 성공 (임기 5년, 국민직선으로 선출)[3)]
2009. 2. 5.	헌법개정안 통과 짐바브웨 통합정부 구성 합의 관련, 총리직 창설 등이 주요 내용
2009. 2. 11.	Morgan Tsvangirai 총리 취임
2009. 10. 30.	Morgan Tsvangirai 총리 통합정부 참여 중단 선언
2009. 12.	2010년도 짐바브웨 정부 예산안 발표(여야 통합정부의 최초 예산안)

2) CIA, The World Factbook-Zimbabwe, 2010 (www.cia.gov) 참조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30여 년간 계속 집권하고 있고 그에 대항하는 Morgan Tsvangirai이 총리가 되어 현재의 짐바브웨는 통합정부가 구성되어 있다. 짐바브웨 정부신문[4]에 의하면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은 2012. 3. 전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만약 Morgan Tsvangirai 또는 로버트 무가베가 아닌 제3자가 대통령이 되면 현재 짐바브웨의 법령은 상당히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Morgan Tsvangirai은 이하 Ⅲ.에서 언급되는 내국인지분확대법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만약 그가 집권하게 되면 동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2. 광업·경제 현황[5]

짐바브웨 광업의 특징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잠비아, 콩고민주공화국 등의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세계적인 외국광업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대규모 광산들은 적고, 중소규모의 광산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1960년도에서 1970년대 경까지 광업부문은 짐바브웨 경제에서 큰 몫을 차지하였지만 1980년대 초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경감으로 광업 부문이 큰 타격을 입어 광산이 폐광되었다. 한편 짐바브웨의 독재정치와 이에 따른 외환부족 등의 대내외적인 정치 및 경제 문제로 말미암아 현재 광업투자환경이 열악해져 짐바브웨 광업은 수년간 침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2년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의 백인 소유 농장 환수 조치[6] 이후 짐바브웨는 서방국가로부터

3) 위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무가베 정권의 정당성이 문제되었고 결국 또다른 대선출마자인 Morgan Tsvangirai와의 통합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4) 2011. 9. 2.자 Herald Newspaper

5)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사이트(http://www.komis.or.kr/v2009/index.jsp) 및 Mining Annual Review USGS, Minerals Yearbook, Zimbabwe 2007, 2009 등 참조

6)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2002년 8월 초 "흑인농민 100만 명이 경작하는 1,600ha의 농토는 작물재배가 불가능할 정도로 나쁜 데 백인지주 5,000명이 소유한 1,100만ha는 비옥한 농토다. 8월 말까지 백인지주들의 농지를 환수해 흑인 농민 35만 명에게 나눠주겠다."고 발표한 이후 짐바브웨 정부가 백인 농장주들이 소유한 토지를 강제로 환수하고 백인농장주들을 짐바브웨 밖으로 추방하고 환수된 토지를 흑인들에게 재분배한 조치를 말한다. 짐바브웨 정부는 2005년에는 헌법개정을 통해 백인 소유 농장 환수 조치 관련 법적 소송을 금지하는 등

무역제재조치[7]를 당하고 있어 그에 따른 외환부족으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석유 등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이 어렵고, 물가는 폭발적으로 치솟아 광업활동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어 많은 광산들이 문을 이미 닫거나 폐광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짐바브웨 현 경제난은 근본적으로 (i) 서방국가들 및 국제금융기구 등과 계속되고 있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초래된 극심한 외환 부족, (ii) 외국인투자 부진, (iii) 통제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 인플레이션, (iv)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른 금융 및 실물경제 왜곡, (v) 전력 및 유류 등 에너지 부족, (vi) 광업, 농업,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전반적인 침체, (vii) 노동의욕 상실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된다.

짐바브웨는 서방국가들 및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계속 경제제재를 받게 되자 위 경제제재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대처하기 위해 동방정책(소위 "Look East Policy")를 추진하여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8]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추진, 위 백인 소유 농장 환수 조치가 짐바브웨와 서방국가들간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핵심 사안으로 부상한 바 있다. 백인 소유 농장 환수 조치는 현재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농장을 재분배 받은 흑인들 상당수가 정착 기피현상을 보이거나, 농장 운영 경험 및 종자·비료·장비·전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이러한 대규모 상업영농 체제의 붕괴는 과거 남부 아프리카의 식량 수출국이었던 짐바브웨를 최악의 식량부족국가로 전락시키는 원인중 하나가 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 IMF 및 EU는 백인 소유 농장 환수 조치 이후 짐바브웨에 대한 지원사업을 모두 중단하였다. 한편 EU와 미국은 짐바브웨 정부와 관련된 자산을 모두 동결하고 짐바브웨로의 재산 이전을 금지하였다(미국의 자산동결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V. 참조).

8) 중국이 2011. 3. 23. 짐바브웨에 7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아래 기사 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973183)

Ⅲ. 짐바브웨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1. 내국인지분확대법(Indigenisation and Economic Empowerment Act)

가. 문제의 소재

2008. 4. 17. 내국인지분확대법(Indigenisation and Economic Empowerment Act)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위 법률은 외국인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바 위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위 법령들이 한국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나. 내국인지분확대법의 주요 내용

짐바브웨 정부는 짐바브웨 내국인[9]이 모든 짐바브웨 회사(단, Private Company[10]는 제외)의 지분을 최소 51% 이상 소유하게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Regulation)을 제정한다(내국인지분확대법 제3조 제1항, 제21조).

위의 지분율 요건(짐바브웨 내국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것)을 지키지 않는 회사(이하 "Non-compliant business") 가 있는 경우 내국인지분확대부 장관(Minister of Youth Development, Indigenisation and Empowerment)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Licensing Authority")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위 명령의 내용은 Licensing Authority가 Non-compliant business의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하라는 것이다.[11] 위 명령과 Licensing Authority를 규율하는 법률

9) 1980. 4. 18. 이전에 인종 때문에 불평등한 대우를 당한 자, 회사, 단체 및 그 승계인을 의미한다(내국인지분확대법 제2(1)조 참조). 1980. 4. 18.은 짐바브웨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이다.

10) Private Company란 당해 회사의 지분권자의 수가 50인 미만인 회사를 의미한다. 짐바브웨 Companies Act 33(1)(b)조 참조.

11) 짐바브웨 언론에 의하면 짐바브웨 정부는 내국인지분확대법을 준수하지 않은 외국인광업회사의 인·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즉, 내국인지분확대부 장관은 2011. 9. 6. 짐바브웨 최대의 백금 광업회사인 ZIMPLATS사의 광산운영권을 취소하고 동사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하였다(http://www.voanews.com/zimbabwe/news/Zimbabwes-Indigenization-Minister-Attempting-to-Revoke-129387363.html 참조).

의 내용이 배치될 경우 위 명령의 효력이 우선한다(내국인지분확대법 제5조).[12]

다. 내국인지분확대법의 하위 법령(광업 관련)의 주요 내용

(1) 내국인지분확대법 시행령(Indigenisation and Economic Empowerment (General) Regulations, 2010)[13]

외국인 회사는 내국인지분확대계획(Indigenisation Implementation Plan)을 내국인지분확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외국인 회사란 짐바브웨 내국인의 지분소유비율이 51% 미만이고 자산가치가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내국인지분확대부 장관은 제출된 내국인지분확대계획을 검토한 직후 짐바브웨 내국인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지분비율 및 위 비율을 달성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보에 게재한다(동 시행령 제5(4)조).

(2) 내국인지분확대법 고시(Minimum Requirements for Indigenisation Implementation Plans Submitted by Non-indigenous Businesses in the Mining Sector[14])

위 내국인지분확대법 시행령에 따라 2011. 3. 25. 내국인지분확대법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었고 그 내용 중 광업회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12) 짐바브웨 정부는 중국 기업은 내국인지분확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다가 최근 입장을 바꾸어 중국 기업 또한 위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발표하였다. 즉, 짐바브웨 내국인지분확대부 장관인 Kasukuwere는 2011. 3.경 일부 중국 기업은 짐바브웨 정부와 MOU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내국인지분확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가 2011. 10.경에는 중국 기업도 내국인지분확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발표하였다.
(http://www.newsday.co.zw/article/2011-03-02-kasukuwere-exempts-chinese-from-indigenisation및 http://www.dailynews.co.zw/index.php/business/35-business/4475-chinese-firms-face-indigenisation-wrath.html 참조)

13) 2011. 3. 25. 개정되었다.

14) General Notice 114 of 2011 INDIGENISATION AND ECONOMIC EMPOWERMENT(GENERAL) REGULATIONS, 2011

외국인 광업회사(Non-indigenous mining business)는 2011. 3. 25. 부터 45일 이내에 내국인지분확대계획을 내국인지분확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광업회사란 짐바브웨 내국인의 지분이 51% 미만인 회사 또는 짐바브웨 내국인이 그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회사 중의 하나에 해당하면서 광업과 관련된 순자산이 미화 1달러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외국인 광업회사의 외국인 주주는 2011. 3. 25.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된 자(Designated entity)에게 지분을 이전하여 최소 내국인지분확대 비율을 달성해야 한다(단, 내국인지분확대부 장관은 위 기간을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정된 자란 내국인지분확대 펀드(National indigenization and economic empowerment fund), 짐바브웨 광업발전회사(Zimbabwe Mining Development Corporation) 등을 말하고 최소 내국인지분확대 비율이란 외국인 광업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비율(Controlling interest) 또는 51%를 의미한다.

지정된 자에게 외국인 광업회사의 지분이 이전될 경우 그 대가로 지급되는 매매대금의 액수는 위 회사에 의해 채굴되는 광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내국인지분확대부 장관과 외국인 광업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라. 참고사항: 짐바브웨 광업법 개정안
(Mines and Minerals Amendment Bill, 2007[15])

짐바브웨 광업법 개정안은 내국인지분확대법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짐바브웨 광업법 개정안 제411조에 의하면 정부 정책의 목표

15) 2007. 11. 16. 관보에 게재된 개정안이다. 2011년 현재 다른 개정안이 짐바브웨 국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내용은 현재까지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는 (i) 전략광물(Strategic Energy Minerals[16])을 채굴하는 회사의 경우 짐바브웨 정부가 그 지분의 최소 51%[17]를 보유하는 것, (ii) 귀금속(Precious Metals, Precious Stones[18])을 채굴하는 회사의 경우 짐바브웨 정부 또는 짐바브웨 내국인이 그 지분의 최소 51%[19]를 보유하는 것, (c) 기타 광물을 채굴하는 회사의 경우 짐바브웨 내국인이 그 지분의 최소 51%를 보유하는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정부 정책의 목표(광업회사 지분의 최소 51%를 짐바브웨 정부 또는 짐바브웨 내국인이 보유하는 것)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짐바브웨 정부는 당해 회사에 대해 광업에 관한 권리(탐사권, 채굴권 등)를 갱신하거나 연장해 주지 않는다(짐바브웨 광업법 개정안 제416조 제1항).

마. 내국인지분확대법이 한국 투자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이미 짐바브웨 광업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경우

한국기업이 투자한 광업회사에 대하여 짐바브웨 정부 또는 짐바브웨 내국인의 지분소유비율이 51% 미만인 경우, 이를 51%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위 광업회사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국 기업은 소수주주로서의 권리 확보를 위하여 다른 주주들과 주주간계약, 합작투자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장래에 짐바브웨 광업에 투자할 한국 기업의 경우

16) Nuclear energy source material(우라늄 또는 토륨 또는 위 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 등을 말한다(광업법 제5조).
17) 25%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을 것이고(non-contributory), 그 외의 지분에 대하여는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contributory).
18) Precious Metals이란 금, 은, 백금 또는 위 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말하고 Precious Stones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또는 위 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광업법 제5조).
19) 25%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을 것이고(non-contributory), 그 외의 지분에 대하여는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contributory).

장래에 짐바브웨 광업회사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회사의 지분을 51% 이상 취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한국 기업은 자신의 소수주주로서의 권리 확보를 위해 다른 주주들과 주주간계약, 합작투자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짐바브웨의 조세제도[20)]

가. 조세조약 체결 여부

국세청에 의하면 2010. 6. 30. 현재 대한민국과 짐바브웨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21)] 필요한 경우 짐바브웨와의 조세조약 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세율

(1) 법인세율(Corporate income tax)

짐바브웨의 기본 법인세율은 30%이고, 성장중점지역[22)](Growth Point Areas)에서 소재한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i) 제조업은 10%, (ii) 도로, 교각, 위생 및 식수 시설 제공 업종은 15%이다.[23)] 또한, 생산한 제품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0%이다.

(2) 원천소득세율(Withholding tax)

원천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상장기업 배당금에는 15%, 비상장기업 배당금에는 20%, 상장회사주식매각차익에 대하여는 5%, 금융이자소득

20) 짐바브웨 명예 영사관 사이트(http://www.zimbabwe.or.kr) 참조
21) 국세청 사이트 (http://www.nts.go.kr/info/info_05_06_01.asp?minfoKey=MINF7720080218101101&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 참조
22) 짐바브웨 재무부가 지정한다.
23) 성장중점지역에 대한 조세특례의 유효기간은 최초 5년이다.

에 대하여는 20%의 원천소득세율이 각 적용된다.

다. 광업권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광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회사는 탐사 비용, 광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 건설 비용, 로열티[24]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15조 (2) (f)).

3. 영주권[25]

일정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즉,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영구영주권(permanent residence)을 신청할 수 있고, 짐바브웨 투자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단독으로 미화 30만 달러 이상 또는 짐바브웨 국민과 합작하여 미화 1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유효기간이 3년인 영주권(residence permit)을 신청할 수 있고 3년이 경과하면 영구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4. 짐바브웨의 사법 제도 및 투자보장협정

가. 사법 제도[26]

짐바브웨는 1965년 투자분쟁해결협약[27]과 1958년 뉴욕 협약[28]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위 협약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짐바브웨 정부와의 투자 관련 분쟁을 국제중재[29]에 회부할 수 있다.

나. 투자보장협정

24) 광업법(Mines and Minerals Act) 제245조에 의해 부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25) 짐바브웨 투자청 사이트(Zimbabwe Investment Authority, http://www.zia.co.zw/) 참조
26) 미국 국무부 사이트(http://www.state.gov/e/eeb/rls/othr/ics/2011/157388.htm) 참조
27) 1965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28) 1958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29)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에 의해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른 중재

대한민국 정부와 짐바브웨 정부는 2010. 5. 24.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투자보장협장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효되지 않았고 그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30] 장래에 위 투자보장협장이 발효될 경우 국내기업의 짐바브웨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V. 짐바브웨의 광물자원투자 관련 법제

1. 문제의 소재

이하에서는 한국 기업이 짐바브웨의 광업에 투자할 경우 적용될 짐바브웨 광업법(Mines and Minerals Act)의 주요내용과 기타 법령의 내용을 소개한다.

30) 외교통상부 담당자에 비공식적으로 유선상 문의한 바에 따르면 짐바브웨와의 투자보장협장은 아래의 전형적인 투자보장협정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목적]
1. 해외진출 우리기업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 기진출 우리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확보
2.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
3. 개도국에 대한 해외투자 확대를 도모
- 협정체결에 따른 투자 안전성 제고
- 보호무역장벽, 국내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감소 극복을 위한 개도국 현지 직접투자 촉진
[주요내용]
투자 및 투자자의 정의
투자자에 대한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보장
전쟁.내란 등에 의한 투자손실의 보장
국유화 및 수용(expropriation) 보상
투자수익 등의 송금(transfer)보장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 분쟁의 해결
체약 당사국간 분쟁의 해결 등

2. 짐바브웨 광업법의 주요 내용

짐바브웨 광업법은 탐사권, 채굴권 등 광업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요건,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광업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특히 짐바브웨 광업법에 의하면 짐바브웨 정부가 일방적으로 광업권 관련 토지(이하 "Mining Location")를 몰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가. 탐사권

(1) 통상탐사권(Ordinary Mineral Prospecting License)

① 의의

- 광물 자원의 존재 여부를 탐사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을 말한다.

② 신청 방법

- 짐바브웨의 영구거주자[31](Permanent resident)는 Mining Commissioner[32]에게 탐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영구거주자는 자신의 성명과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광업법 제20조).
- Mining Commissioner가 탐사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광업법 제20조).

③ 유효기간

- 통상탐사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광업법 제23조)이고 탐사권의 연장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④ 탐사권이 부여되지 않는 토지(광업법 제31조)

- 아래 토지에 대하여는 탐사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i) 농가(Principal Homestead)로부터 450m 이내에 소재한 토지

31) 법상 영구거주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의미가 불분명한바 위 III.3.과 관련하여 짐바브웨의 영구영주권(Permanent Residence)을 발급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2) Mining Commissioner는 Mining Location에서 활동하는 정부 소속 감독관을 말한다(광업법 제5조). 이하 같다.

(ii) 농장 근로자들을 위해 건설된 숙소로부터 90m 이내에 소재한 토지

(iii) 경작 중인 토지로부터 15m 이내에 소재한 토지

(iv) 농가 건물(Farm Building)로부터 9m 이내에 소재한 토지

(v) 허가받은 비행장 근처에 소재한 토지

⑤ 분쟁 해결

- 탐사권의 존부에 관하여 탐사권자와 탐사권이 존재하는 토지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 행정법원(Administrative Court)의 결정에 따른다(광업법 제32조).

(2) 독점적 탐사권(Exclusive Prospecting Order)

① 의의

- 독점적 탐사권이란 독점적 탐사권 보유자만이 특정 지역(Reservation)에서 탐사 및 굴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광업법 제103조). Mining Commissioner가 위 특정 지역(Reservation)의 위치를 결정한다(광업법 제35조).

② 신청 방법

- 신청인은 미화 9만 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고 Board[33]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위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재정 상황, 탐사 계획, 탐사를 원하는 광물, 독점적 탐사권이 부여되기를 희망하는 지역의 위치, 면적, 신청인이 회사인 경우 그 상호, 이사들의 국적, 독점적 탐사권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행할 탐사 절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광업법 제87조).
- 대통령이 독점적 탐사권의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광업법 제90조).

③ 유효기간

- 독점적 탐사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초 3년이고 위 유효기간은 추가로 3년간 연장될 수 있다(광업법 제94조).

④ 취소

33) Board란 광업 관련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정부 소속 위원회(Mining Affairs Board)를 말한다(광업법 제5조). 이하 같다.

- 독점적 탐사권 보유자가 독점적 탐사권 신청 당시 제출한 탐사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Minister[34]는 Board의 건의를 받아 독점적 탐사권을 취소할 수 있다(광업법 제101조).

나. 채굴권

(1) 통상채굴권(Mining Lease)

① 의의

- 통상채굴권이란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광업법 제150조).

② 신청 방법

- 통상채굴권의 신청인은 채굴하려는 광물의 종류, 통상채굴권이 부여되는 토지의 위치,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고(광업법 제135조). 통상채굴권을 발급받으면 이를 등록해야 한다(광업법 제145조, 제146조). 통상채굴권 보유자는 통상채굴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고 Board가 추가 여부를 결정한다(광업법 제154조).

③ 토지매각명령신청 및 토지매수명령신청

- 통상채굴권 보유자는 행정법원(Administrative Court)에 토지매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각명령이란 행정법원이 채굴이 실시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그 소유 토지를 통상채굴권 보유자에게 매각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광업법 제314조).
- 반면 토지 소유자도 행정법원(Administrative Court)에 토지매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수명령이란 행정법원이 통상채굴권 보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광업법 제314조).

34) Minister란 짐바브웨 광업부 장관(Minister of Mines)을 말한다(광업법 제5조). 이하 같다.

(2) 특별채굴권(Special Mining Leases)

① 의의

- 특별채굴권이란 광산에의 투자가 전부 또는 대부분(mainly) 외화로 이루어지며 그 투자금액이 미화 1억 달러를 넘고, 광산의 생산물이 기본적으로 수출을 위한 것인 경우 신청하는 광물채굴허가를 말한다.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Board는 (i) 매장된 광물의 성격과 양, (ii) 광산의 예상 채굴연한, (iii) 예상되는 투자액, (iv) 예상되는 채굴방식 등을 고려하여 특별채굴권을 부여할 수 있다(광업법 제159조).

② 신청 방법

- 신청인은 Mining Commissioner에게 아래와 같은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한다(광업법 제159조 제3항).
  (i) 탐사를 원하는 광물
  (ii) 독점적 탐사권이 부여되기를 희망하는 지역의 위치, 면적
  (iii) 신청인이 보유한 등록된 Mining Location
  (iv) 광산개발계획. 그 첨부서류로는 경제성 분석자료(feasibility test), 자금조달계획(financing plan), 마케팅계획(marketing plan), 광물매장량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 광산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오염의 예방 및 처리, 폐기물의 처리, 수질환경의 보호에 관한 자료), 제반 필수 Infrastructure에 관한 자료(철도, 도로, 전력 등) 등이 요구된다.

③ 유효기간

- 특별채굴권의 유효기간은 25년을 넘지 못한다. 단 위 유효기간은 대통령의 승인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광업법 제164조).

④ 로열티(Royalty) 지급 의무

- 특별채굴권을 부여받은 광업권자는 채굴한 광물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광업법 제244조).
- 광업권자는 로열티 계산을 위하여 매달 Mining Commissioner에

게 광물 생산량 및 그 처분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광업법 제245조, 제251조).

- 광업권자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Mining Commissioner는 광업권자의 광물 처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광업법 제253조).

(3) 특정 광물 채굴에 필요한 특별권한(Special Grants for coal, mineral oils and natural gases)

① 의의

- 특별권한(Special Grants)이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물질을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광업법 제298조).

② 신청 방법

- 특별권한의 신청인은 Board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 위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재정 상황, 탐사 계획,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 탐사를 원하는 광물, 독점적 탐사권이 부여되기를 희망하는 지역의 위치, 면적이 기재되고 신청인이 회사이면 상호, 이사의 국적 등이 기재된다(광업법 제299조).
- 대통령이 특별권한의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광업법 제301조).

③ 로열티 지급 의무

- 특별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채굴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물질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로열티의 액수는 대통령이 결정한다(광업법 제303조).

④ 특별권한 부여의 취소

- 특별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특별권한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할 경우 대통령은 특별권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위 취소 시점으로부터 최소 12개월 이전에 취소를 고지하는 서면통지가 특별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광업법 제305조).

다. 광업권자(Miner)의 지역사회에 대한 금전지급의무

Minister는 Miner에게 광업권이 소재한 인근 지역사회에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Minister는 위 금전의 액수를 일시불로 또는 생산되는 광물가격에 비례하여 결정한다(광업법 제255조).

라. Mining Location의 몰수 및 매각명령

(1) 짐바브웨 정부의 Mining Location 몰수

① Mining Location의 부적절한 운영을 사유로 한 몰수

- 누구든지 등록된 Mining Location이 운영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운영된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실을 Mining Commissioner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광업법 제320조 제1항).
- 위와 같은 보고를 받으면 Mining Commissioner는 정부 소속 엔지니어로부터 보고서를 받고 이 문제를 Board에 회부한다(광업법 제320조 제3항).
- Board는 Mining Location이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조사한 이후 Mining Location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Mining Location의 소유자를 소환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Mining Location의 진술을 들은 이후 Board는 대통령에게 Mining Location을 몰수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광업법 제322조).
- 대통령은 모든 정보를 종합한 결과 Mining Location이 운영되지 않았거나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Mining Location 몰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은 관보에 게재된다(광업법 제324조).
- Mining Location 몰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Mining Commissioner는 해당 토지를 Minister에게 양도하고(광업법 제325조) Board는 위 토지의 매각 조건을 정한 후 그 매각 조건을 매달 신문에 공고한다(광업법 제327조). 위 토지가 매각되는 경우 몰수된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소요경비를 제외한

금원을 지급받게 된다(광업법 제329조). 만약 몰수된 토지가 위와 같이 Minister에게 양도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간 매각되지 않는 경우 위 토지는 짐바브웨 정부에 귀속된다(광업법 제330조).

② 공익을 사유로 한 몰수

- 대통령은 언제든지 Mining Location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광업권자가 소유한 Mining Location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거나 광업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업권자에게 보상할 금원의 액수를 정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광업법 제398조).

③ 낭비가 심한 운영을 사유로 한 Mining Location 등록의 취소

- Mining Commissioner는 Mining Location의 소유자가 낭비가 심한 채굴방식 또는 야금방식을 사용할 경우 이를 Board에 보고할 수 있다.
- Board는 Mining Location의 소유자에게 낭비가 심한 방식을 개선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위 소유자가 위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Mining Location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광업법 제399조).

(2) Mining Location 매각명령

- Mining Location을 소유한 자(이하 "신청인")는 Board에게 다른 Mining Location의 매각명령을 내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매각명령이란 Board가 다른 Mining Location의 소유자(이하 "피신청인")에게 그가 소유한 Mining Location을 신청인에게 매각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광업법 제401조).
- Board는 신청인의 신청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Miniter에게 매각명령을 내릴 것을 건의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명령을 기각한다. Board의 기각은 종국적이고 다툴 수 없다(광업법 제401조).

  (i) 신청인의 Mining Location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

여 피신청인의 Mining Location이 필수적일 것,

(ii) 신청인이 신청 이전에 피신청인의 Mining Location을 매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을 것,

(iii)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을 것,

(iv) 매각명령이 짐바브웨의 국익에 기여할 것

- 대통령은 Minister의 의견을 듣고 매각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 매각명령에 의해 토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는 매각명령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자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 위 금전적 보상의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3. 기타 법령

가. 정보공개법(Access to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짐바브웨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공기관(Public body)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5조). 따라서 한국 기업이 짐바브웨 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서의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나. 환경관리법(Environmental Management Act)

짐바브웨 환경관리법에 의하면 광업권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할 의무가 있다(짐바브웨 환경관리법 제97조).

다. 짐바브웨 광물마케팅회사법(Zimbabwe Minerals Marketing Corporation)

짐바브웨 광물마케팅회사법에 의하면 광물들의 판매는 짐바브웨 광물마케팅회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짐바브웨 광물마케팅회사법 제20조).

4. 소 결

위에서 보듯이 짐바브웨에서 광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인·허가를 취득한 이후에도 각종의 규제와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짐바브웨 광업에 투자할 경우 위에서 언급된 각종 규제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된 Mining Location의 몰수 및 매각명령은 짐바브웨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Mining Location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V. 미국 정부의 자산동결조치에 의한 짐바브웨 투자 제한

1. 문제의 소재

대한민국이나 짐바브웨 법령은 아니지만 미국 법령에 의해 한국 기업의 짐바브웨 투자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하에서 이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즉, 미국 재무부 내 부서인 OFAC(Treasury Department'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는 짐바브웨 내 일정한 자에 대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근거법령

짐바브웨 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동결조치에 관한 미국 대통령명령 제13288호, 제13391호, 제13469호(이하 "본건 미국 대통령명령", Blocking of Property of Persons Undermining Democratic Processes or Institutions in Zimbabwe 68FR11457, United States President issued Executive Order 13288, 70FR71201, 73FR43841)

3. 본건 미국 대통령명령의 적용을 받는 자

미국 시민, 미국 영주권자, 미국 법에 의해 설립된 파트너쉽·단체·신탁·조인트벤처·회사, 외국 회사의 미국 내 지사 및 미국 회사의 외국 지사(이하 통칭하여 "United States persons")

4. 본건 미국 대통령명령상 금지되는 행위 및 위반시의 제재

위 United States persons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재산을 짐바브웨 정부의 상급 공무원(Senior official)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이하 "짐바브웨 내 지정된 자")에게 양도, 지급, 수출, 인출, 기부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미화 50만 달러 또는 위반자가 취득한 이익의 2배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5. 소결

본건 미국 대통령명령에 의하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지사 또는 미국 기업의 한국 내 지사가 소유한 재산을 짐바브웨 내에 지정된 자에게 양도, 지급, 수출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미국 정부로부터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 또는 시중은행에 비공식적으로 질의한 바에 의하면 한국 기업이 한국 내 재산을 짐바브웨 내 지정된 자에 송금하는 경우 본건 미국 대통령명령의 규율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송금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므로 짐바브웨 투자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35]

35) 실무상 송금 과정에서 미국계 은행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미국계 은행이 송금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VI. 결론

이상과 같이 짐바브웨 내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와 광물자원투자 관련 법제를 개관하여 살펴 보았다. 한국 기업이 짐바브웨의 광산업에 투자할 경우 고려해야 할 대표적인 법률적 리스크로는 내국인지분확대법에 의한 지분 소유비율 제한, 광업법에 의하여 짐바브웨 정부가 발령하는 Mining Location의 몰수명령 또는 매각명령을 들 수 있다. 또한 백인 소유 농장 환수 조치, 내국인지분확대법 등을 볼 때 짐바브웨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법률이 제·개정될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